

FINAL

소방위 법령IV 정오표(2020.8.25.)

(p)	오(수정 전)	정(수정 후)
p 69 12 ③ (20.7.28 개정)	평소 행실, 근무실적, 공적, 뉘우치는 정도	당시 계급, 징계등 요구의 내용,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, 평소 행실, 공적,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
p 91 3번 ②	면접시험성적	면접시험성적
p 142 6번	지방소방공무원	소방공무원
p 223 6번 해설 3.2)	직위해제기	직위해제기간
p 396 4번 해설 11	인정하는	인정하는 경우

소방공무원징계령 개정 [제30883호 개정 · 시행, 2020. 7. 28.]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 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징계 사유의 입증을 위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의무화하며, 징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,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·의결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와 회의 내용·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,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혐의 당시 계급 및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며 근무 성적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<법제처>

2. 개정 내용

- 1) 제13조(심문과 진술권) 제4항 보완 :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다만,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.

* 제1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.

2) 제14조(징계위원회의 의결)에 제3항 및 제4항 신설

- ①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(제14조에 제3항)

* 제11조제1항 단서 :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.

- ② 제3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(제14조에 제4항)

3) 14조의2(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) 신설

-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 대상자,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, 증인, 피해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(이하 이 항에서 "출석자"라 한다)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·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, 회의 내용·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4) 제16조 제2항(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고려사항)

- ① 종전의 규정 : 평소 행실, 근무 성적, 공적(功績),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② 개정 내용 : 혐의 당시 계급, 징계등 요구의 내용,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, 평소 행실, 공적(功績),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.
- ⑦ 추가 부분 : 혐의 당시 계급, 징계등 요구의 내용,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, 그 밖의 사정
- ⑮ 삭제 규정 : 근무 성적,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
- ③ 부칙 제3조 :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5) 제19조의3(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시 청구서 기재사항 중 4호)

- ① 종전 규정 : 평소 행실, 근무 성적, 공적(功績),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
- ② 개정 내용 :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려 사항(혐의 당시 계급, 징계등 요구의 내용,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, 평소 행실, 공적(功績),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)

6) 제20조의2(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) 신설

-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.
1. 녹음기, 카메라, 휴대전화 등 녹음·녹화·촬영이 가능한 기기
 2. 흉기 등 위험한 물건
 3.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
-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1. 녹음, 녹화, 촬영 또는 중계방송
 2.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
 3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·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